

정으로 반론보도청구권은 더욱 정리된 모습을 갖추었으며, 언론중재위원회는 중재결정권이 인정됨으로써 중재기관으로서의 면모를 한층 높이게 됐다. 물론 제5공화국의 언론통제상황에서 언론기본법이 제정되고 반론권 제도가 도입된 정치적, 역사적 성격은 분명 지적돼야 하겠지만 반론권 제도 자체는 그 나름대로의 정당성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론권은 본래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에 보도된 특정 사실 때문에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집단 등 이해관계자가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반박문을 게재하거나 방송하여 이미 행해졌던 사실보도에 대하여 무료로 반박을 할 수 있도록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정간물법상 반론보도청구권은 보도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피해자의 반대 진술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과 신속한 중재절차와 재판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는 점, 그리고 해당 언론을 상대로 동일한 매체 영향력을 이용케 했다는 점에서 피해구제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반론보도청구권은 실질적인 언론피해구제제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4. 반론권과 언론의 자유

한편 반론권이 법제화되면서 원칙적으로 언론의 자유 내지 편집권과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반론권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는 자신의 주장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언론에게는 편집권의 독립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다준다. 반론보도청구권은 피해자의 반론보도문을 무료로 지면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로서 편집권과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언론사의 입장에서 보면 편집권은 전적으로 언론이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이다. 언론이 전문적인 관행과 판단에 따라 외부의 간섭 없이 정보나 의견을 자유롭게 취사선택할 독립적인 기능이 보장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편집권이다. 그런데 반론권이 제도화되고 확대되면 그만큼 언론의 편집권 행사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Miami Herald Publishing Co. v. Tornillo(1974)' 사건에서 플로리다주의 반론권법을 위헌이라고 판시했는데, 신문의 편집권이 반론권보다 우선이라고 해석을 내린 것이다. 이 판례에 따라 미국에서 반론권 제도는 신문에 대하여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고전적인 언론자유 개념이 철저하게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론권이 편집권을 위협해서는 언론자유가 결코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반론권은 언론의 편집권과의 충돌뿐 아니라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도 논란거리의 하나이다. 언론의 입장에서 반론보도를 수용하는 것이 귀찮고 두려워 정작 다루어야 할 사회적 쟁점을 다루지 않고 회피한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게 될 것이다. 미국에서 FCC가 방송 반론권의 대표적인 제도였던 Fairness Doctrine을 포기한 것도 그런 이유로 해석되고 있다. 방송국들은 Fairness Doctrine에 입각하여 복잡한 쟁점을 적극 다루기보다는 자칫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것을 두려워해 아예 보도를 회피하는 경향이 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경우 반론권의 제도화가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5. 언론보도의 현실과 대응

1990년대부터 반론청구 및 언론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우리 언론의 보도관행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다. 예컨대 마감시간에 따른 불충분한 사실 확인, 소문이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보도, 특종의식과 속보 등 무리한 취재경쟁, 상업주의적 경쟁에 따른 선정적 보도, 출입처취재시스템과 보도자료에 따른 발표저널리즘, 기자 개인의 전문지식 및 경험 부족과 윤리의식의 부재 등 다양한 원인들을 들 수 있다.

특종 의식과 속보 경쟁이 벌어지면서 개인의 인격권이 소홀히 취급되기 마련이다. 또 무의식적으로 행사되는 위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보도 관행이 타인이 명예나 사생활 등 인권 침해를 일으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언론에 의한 피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막강한 언론기관을 상대로 해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곤 했는데, 이런 소극적인 대응이 언론의 잘못된 관행을 키워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개인의 인격권 침해를 야기하는 보도를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차적으로 독자를 상대하고 있는 신문이 어떻게 독자에게 피해를 주는 보도를 하는지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문제이다. 언론이 취재와 보도에서 가장 신중하게 대처해 할 대상은 출입처에서의 취재원이 아니라 바로 독자 일반인 것이다. 무엇보다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유의해야 할 것이며 피해 결과에 대해선 자발적으로 반론을 적극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언론기관의 여건상 정확한 보도가 어려운 데다가 앞으로는 언론보도 피해자들이 언론의 침해에 대하여 언론중재신청, 반론보도 내지 정정보도 청구, 손해배상청구, 명예훼손 형사고소 등과 같은 법적 대응을 주저함이 없이 선택하고 그런 건수 역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법원도 손해배상에 대하여 배상액을 과거보다 상향조정해 갈 것이고 그 배상액 규모도 만만치 않아 언론사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세는 문제점들의 개선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피해자의 반론권 요구에도 아직 인색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도 이제는 이런 변화 추세를 직시하고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언론의 신뢰성이 추락해갈 것은 물론이고 극단적으로는 언론사의 경영에 압박을 주는 결과도 발생할 수도 있다.

첫째, 언론은 적극적인 예방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언론이 과열 경쟁 속에서 사실 확인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보도하는 것이 문제이다. 오보의 가능성, 인권침해의 소지를 미리 검토하고 예방하는 노력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물론 신속성을 요구하는 언론의 속성상 기사의 진실 여부를 모두 확인한 후 보도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지나친 확인 보도와 진실성 입증의 요구는 도리어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반론 시비는 기사의 가치판단이나 의견에 대한 반론보다는 기사의 사실성 여부와 관련한 문제에서 빚어지고 있다. 미리 치밀한 취재로 정확한 기사를 썼다면 반론은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없을 것이다. 언론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보도내용과 방향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는 만큼 언론보도가 특종이나 속보 경쟁에 매달리기보다는 정확한 보도로써 한층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보도가 나간 뒤 관련 당사자에게 사후 반론의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만 보도와 제작에 앞서서 취재 및 기사작성 단계에서부터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바람직하다. 법률적으로 기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인정해주지만 보도에 앞서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합리적인 균형을 갖췄는지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사실보도는 철저한 확인을 거쳐 반론이나 정정이 불필요하게끔 작성해야 하며, 의견과 평가가 서로 다를 수 있는 기사는 관련 당사자들의 반론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피해자의 주장에 상반되는 자료를 확보하고 전화통화 등을 통해 당사자에게 확인해 보도하는 것이 좋다.

둘째, 언론보도피해의 예방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언론사 내부에서 기자들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언론관련법규 등의 재교육을 통해 언론 피해 발생에 대한 주의 노력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일부 언론에서 변호사에 의한 기사사전열람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언론보도 피해예방을 위해 법률전문가를 고용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 등을 지금보다 더 활성화해볼 만하다.

셋째, 사내 심의부서의 기능을 언론피해의 사전 예방장치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심의 기능은 경쟁지와 비교하는 식의 사후심의보다는 ‘잘못’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전심의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

이다. 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구라는 인식전환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심의부서는 사전, 사후에 인권침해의 소지를 적발하고 주의나 경고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이 강화되어야 하며, 심의의 전문화와 효율성 제고, 심의인력의 보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최근에 언론사들이 직접 언론피해구제에 나서고 있다. MBC가 자사 보도 또는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나서서 구제 또는 보상을 해주자는 취지로 ‘언론피해구제센터(가칭)’를 만든다는 계획이 전해지고 있다. MBC는 피해구제 대상과 구체적인 피해구제 방법, 심의기구 구성방안 등을 마련 중인데,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사장 직속의 별도 기구로 만들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물질적인 보상을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⁵⁾

이에 앞서 동아일보가 ‘독자인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동아일보는 지난 4월 사고를 통해 “동아일보 보도로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독자가 구제신청을 할 경우 공정한 절차를 거쳐 손상된 독자의 권리를 되찾아주겠다”며 외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인권위원회를 만들었다. 피해구제의 절차는 자사의 독자서비스센터에서 접수를 받아 일단 관련 취재부서와의 접촉을 주선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독자서비스센터가 쌍방의 의견을 조율하고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인권위원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다. 동아일보의 독자인권위원회는 보도에 따른 피해를 기사를 통해 구제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이고 물질적 보상의 문제는 법원의 판단으로 돌리고 있다.

그동안 반론보도나 정정보도에 인색했던 언론사들이 자사의 잘못된 보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진일보한 모습이다. 이 같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언론사 소송을 미리 예방하는 방편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제도가 자칫 자사 홍보에 그치지 않고 독자와 시청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의 창구가 되기 위해서는 보도 및 제작부서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피해에 따른 물질적인 보상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언론은 보도 내용에 잘못이 있을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자기와는 서로 다른 태도와 주장도 같이 알려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위에서 반론요구를 늘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고의가 아니더라도 기자의 식견과 객관성 부족, 부주의한 감정개입 등으로 보도피해를 일으키는 현실을 언론은 인정해야 한다. 보도기사는 구체적인 사실들을 바탕으로 하지만 기자가 거기에 비판이나 논평을 가하는 식으로 ‘의견 개입행위’를 하는 경우도 많다.

언론이 자존심 때문에 정정 내지 반론의 기능을 자율적으로 하지 않고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언론자유를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는 사후 구제로는 완전히 회복하기가 힘든 만큼 해당 언론들은 반론 요구에 대하여 야박하게 거부할 필요가 없고, 또 반론보도가 언론의 얼굴에 먹칠을 한다는 피해의식을 가질 이유도 없다. 언론사는 소송과 반론청구 등의 증가를 불필요한 부작용으로 볼 것만이 아니라 언론의 잘못된 보도관행에도 문제가 있음을 알고 이를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언론사가 반론보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나설 경우 언론이 인권보호에 대하여 적극적이라는 인상을 피해자에게 주게 되고 자칫 감정에 휘말린 소모적인 소송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6. 맺는말

현대 언론이 거대화, 독점화 하는 가운데 역설적으로 개인의 표현자유는 더욱 위축되고 있으며 개인의 인격권은 항상 거대 언론으로부터의 침해에 노정되어 있을 수 있다. 독자와 시청자로부터 유

5) 기자협회보 2001.11.3